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역사 용어 사용과 서술상의 제문제

: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의 서술을 중심으로

金寶林*

(e-mail: kimbr@cbnu.ac.kr)

目次

1. 머리말
 2. 교과서간 용어 사용의 불일치
 3. 용어(사실)에 대한 해석
 4. 해설의 부족
 5. 사실의 오류
 6. 맺음말
-

1. 머리말

모든 역사교육의 기본적인 의사전달의 단위가 되는 것은 바로 역사 용어이다. 역사용어란 일반적으로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하고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단어나 구’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말이다. 역사적 용어는 시간과 더불어 그 지칭하는 의미와 범위가 변하여 왔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역사용어는 다양한 역사적 사실의 체계적인 분류과정에서 범주화된 사건이나 성격을 특정한 역사용어으로써 개념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 바로 역사 용어 정리의 당위성이 있다.¹⁾

* 충북대학교, 부교수, 역사교육

1) 공태영(1999), 「역사용어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학습 방안」, 『역사교육논집』 Vol.23·24, pp. 319-320.

특히 근현대사와 관련한 역사 용어는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성, 즉 일본에 의해 36년간을 침탈당한 역사의 의미를 현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독도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올바른 역사교육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이같이 교과서 서술내용과 관련된 논쟁이나 공박은 주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의미의 부여나 해석과 관련하여 그 역사성의 묘사에 직결된 어휘나 문구, 즉 역사용어에서 발생한다.²⁾

역사용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학계와 역사교육계에서는 용어 사용과 해석의 정립을 위한 노력들을 경주해왔다. 1990년대 이후 역사용어에 대한 학계의 연구로는 1994년 역사교육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역사교육에서 역사 용어 문제”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³⁾와 역사비평사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2회(2005년 73집, 2006년 74집)에 걸쳐 『역사비평』 잡지에 특집으로 ‘역사용어 바로 쓰기’라는 주제로 뜻있는 연구자들의 논문⁴⁾을 실는 등 활발한 역사용어에 대한 논의가 되어 왔다. ‘역사용어 바로 쓰기’ 특집에서는 근현대사 용어를 중심으로 한국사 전반에 걸친 50여개의 역사용어를 살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한국사 교과서와 개설서, 심지어 학계에서도 역사용어에 대한 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역사교과서에서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의 종말을 고하고 우리나라의 ‘일그러진 근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인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에 대한 용어의 혼란과 사실에 대한 해석의 오류와 차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근현대의 기점으로 볼 수 있는 개항의 시점에서 중요한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역사학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李景植(2009), 「歷史教材의 撰述에서 用語選定의 問題」, 『歷史教育』, Vol.109, 2009.

3) 본 학술대회에서는 정선영, 「역사용어의 성격과 그 교육적 이용」, 이경식, 「한국사 서술에서 용어 선정의 경향」, 이창봉, 「국사 수업의 실제에서 용어 지도상의 난점」, 신영범, 「한국 근현대사 관련 역사용어의 이해」 등이 발표되었다. 이 발표문들은 역사교육연구회의 『역사교육』 제56집(1994. 12)에 실렸다.

4) 이상찬, 「을사조약이 아니라 한일 외교권 위탁 조약안이다」, 김희교, 「극동,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함의」, 신동원, 「양력과 음력」, 김동택, 「동포와 형제」, 이기훈, 「민족해방운동과 독립운동」, 이기훈, 「친일과 협력」, 박태균, 「반탁은 있었지만 찬탁은 없었다」 주진오, 「기존 개화파 용어에 대한 비판과 대안」, 이이화, 「신사유람단을 1881년 일본시찰단으로」, 최정기, 「근현대 정치범의 다양한 이름들」, 왕현중, 「광무개혁 논쟁」, 박태균, 「정전협정인가 휴전협정인가」, 김정인, 「왜정시대, 일제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 유정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역사용어 이해실태와 개선방안」, 서중석, 「중간파인가 중도파인가 합작파인가」, 배성준, 「간도·간도출병」(이상, 『역사비평』 No.73, 2005에 실린 논문들임), 편집부, 「역사용어 바로 쓰기」, 이윤상, 「한말, 개항기, 개화기, 애국계몽기」, 은정태, 「역사용어 바로 쓰기」 의사(義士)와 열사(烈士), 송기호, 「통일신라시대에서 남북국시대로」, 『강정숙, 「역사용어 바로 쓰기」 '위안부', 정진대, 공창, 성노예」, 박명림, 「한국전쟁, 6·25 용어 사용과 기억방식에 관한 단상」(이상, 『역사비평』 No.74, 2006에 실린 논문들임.)

역사교과서에서 보이는 용어 사용과 서술상의 문제는 크게 중요한 용어 사용에 있어서의 교과서간 불일치, 용어(사실)에 대한 해석의 문제, 해설의 부족에서 오는 오류, 사실에 대한 오류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최근 주5일 수업에 따른 ‘수업 내용의 축소’라는 교과서 집필기준과 관련하여 지면의 한계를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모든 역사내용을 다 실을 수 없는 것이며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도 없다. 그러나 분명히 서술해 주어야 하는데도 이를 생략하면 사실에 대한 오류가 될 수 있다.

첨예한 대립 구도인 한·일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학계에서도 양국 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⁵⁾ 이러한 점에 입각해서 본고에서는 2014년도에 발행되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8종⁶⁾의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조·일 수호 조규 부록(강화도 조약)’의 용어 사용과 서술의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따르는 이 교과서들은 주로 근현대사 부분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교과서들을 중심으로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에 대한 용어의 교과서간 불일치, 용어(사실)에 대한 해석, 해설의 부족, 사실오류 등의 4가지를 분석 기준으로 삼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집필 기준과 교과서 편수자료⁷⁾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교과용도서를 개발하기 위해 편향성이 우려되는 4개 교과목(국어, 도덕, 역사, 경제)에 대하여 관점의 균형성과 내용·표현상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한 교과용도서의 집필 지침⁸⁾”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역사용

5) 예를 들면 김홍수(2012), 「일본 역사교과서의 강화도조약 기술 검토」, 『東北亞歷史論叢』 No.35 참조.

6) 이후 교과서명은 출판사명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저자	교과서명	출판사	발행년도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2014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014
정재정 외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2014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2014
양현중 외	고등학교 한국사	두산동아	2014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스쿨	2014
김중수 외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	2014
권희영 외	고등학교 한국사	교학사	2014

7) 편수자료는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알아야 할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하는 안내서와 같은 기능을 한다. 교과용 도서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정확한 용어의 제시, 교과용 도서와 관련 각종 제도에 대한 안내가 편수 자료의 주요한 기능이다.(교육과학기술부(2011), 『교과서편수자료(Ⅱ) -인문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편-』 발간사, 경성문화사, p.4)

8) 교육과학기술부(2011.12.3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역

어의 사용에 대한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에 대해서는 “강화도 조약과 서구 열강과의 조약 체결 과정 및 성격 등을 서술한다.”고 하고 있다.⁹⁾

2. 교과서간 용어 사용의 불일치

모든 검정 교과서의 용어가 교과서 편수 용어를 사용하는 한 모두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음에 살펴보는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과 관련한 용어들은 용어에 대한 해석을 함께 포함하므로 어떻게 각 교과서마다 다르게 서술되어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흔히 ‘강화도 조약’ 이라고 하면 운요(雲壤)호 사건 이후 일본과 맺어진 최초의 조약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조·일 무역 규칙 등의 용어가 현행 8종의 교과서에서는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교과서별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 에 대한 용어

출판사	용어의 불일치
천재교육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조·일 무역 규칙 ¹⁰⁾
미래엔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 ¹¹⁾
지학사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 ¹²⁾
비상교육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조·일 통상 장정) ¹³⁾
두산동아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 추가로 체결된 조약 ¹⁴⁾
리베르스쿨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조·일 통상 장정) ¹⁵⁾
금성출판사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는 조·일 수호 조규,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 ¹⁶⁾
교학사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조·일 수호 조규 부록 ¹⁷⁾

사교과서 집필기준 - 한국사·세계사·동아시아사 -, 교육과학기술부

9) 교육과학기술부(2011.12.30), 『위의 책』, p.10.

8종의 교과서는 모두 강화도 조약을 조·일 수호 조규와 같은 것으로 칭하고 있다. 이 중 천재교육을 비롯한 4종의 교과서는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미래엔을 비롯한 나머지 4종의 교과서는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이라 하여 용어의 표시를 다르게 하고 있다.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는 '강화도 조약' 만 표시되어 있고¹⁸⁾ '조·일 수호 조규'에 대한 것은 따로 나타나 있지 않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강화도 조약'을 '1876년(고종 13) 2월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이며, 강화조약 또는 병자수호조약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다.¹⁹⁾

이러한 정황으로 보건데 올바른 용어 사용은 조약의 정식명칭을 앞에 둔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의 표기법이 맞을 것이다.

한편 '조·일 무역 규칙'도 천재교육을 비롯한 다른 6종의 교과서에서는 따로 병기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반해 비상교육과 리베르스쿨에서는 '조·일 무역 규칙(조·일 통상 장정)'이라 병기하고 있는데 이는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조·일 통상 장정'이란 1883년 7월 25일 조선 측의 전권대신인 독판교섭통상사무 민영목과 일본 측 전권대신인 판리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 사이에 조인된 전문 42조의 조약을 말하기 때문이다.²⁰⁾

3. 용어(사실)에 대한 해석

역사적 용어는 '사실'과 그에 대한 '해석'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용어에 대한 해석은 사실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다.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의 평가에 대해 각각의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
- 10) 주진오 외(2014),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pp.183-184.
 - 11) 한철호 외(2014),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pp.178-179.
 - 12) 정재정 외(2014),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p.216.
 - 13) 도면희 외(2014),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pp.204-205.
 - 14) 왕현중 외(2014), 『고등학교 한국사』, 두산동아, p.160.
 - 15) 최준채 외(2014),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스쿨, pp.206-207.
 - 16) 김중수 외(2014),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 pp.228-229.
 - 17) 권희영 외(2014), 『고등학교 한국사』, 교학사, p.176.
 - 18) 교육과학기술부(2011), 『앞의 책』, p.88.
 -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 웅진출판, p.545.
 -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웅진출판, p.608.

<표 2>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에 대한 평가

출판사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에 대한 평가
천재교육	강화도 조약은 일본의 강요뿐 아니라 조선 내부에서 대두된 통상 개화의 요구와 필요성에 의해 맺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²¹⁾
미래엔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지만, 일본에 전적으로 유리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²²⁾
지학사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 그러나 일본에 전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²³⁾
비상교육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조선은 이 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고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강화도 조약은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은 불평등 조약이기도 하였다. ²⁴⁾
두산동아	조선은 일본과 통상 조약을 처음으로 맺어 불평등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 … 일본은 서구 열강들을 본따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불평등한 조항을 집어넣었다. ²⁵⁾
리베르스쿨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었지만 일본에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²⁶⁾
금성출판사	당시 조선 정부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근대적인 외교 관계를 새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통적인 교린 외교를 회복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렇듯 근대적 외교 관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교섭에 임하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²⁷⁾
교학사	당시 조선은 일본과의 관계를 전통적인 교린 체계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근대 국제법상 최초로 외국과 체결한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 되고 말았다. ²⁸⁾

21) 주진오 외, 『앞의 책』, p.184.

22) 한철호 외, 『앞의 책』, p.179.

23) 정재정 외, 『앞의 책』, p.216.

24) 도면희 외, 『앞의 책』, pp.204-205.

25) 왕현중 외, 『앞의 책』 p.160.

금성출판사를 제외한 7종의 교과서에서는 모두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의 성격에 대해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으나 불평등한 주장이었다.”라고 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상당한 지지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평가의 문제점은, 현재 중심적이며 또한 당시의 조선에 외재적인 지점에서 평가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1876년의 조·일 수호 조규란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조약 체결 당시의 동아시아에서 성립하고 있던 국제질서관의 관점에서 평가하려는 해석학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약의 체결이 단지 일본의 책략과 무지몽매함이 결합된 불평등함의 근대성이 결합된 결과적 산물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준거의 틀이었던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조약의 형식 및 내용이 1876년 이전 시기의 동아시아 특히 한일 양국간에 성립하고 있던 국제적법인 관행과 상당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²⁹⁾ 구체적인 조약 체결에 이르는 협상 과정을 보더라도 조선이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체면치레에 관련된 행위만을 한 것은 결코 아니고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때로는 방어적인 때로는 적극적인 협상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도 하였던 것이다.³⁰⁾

윤소영은 이러한 입장에서 당시 불평등 조약은 세계사적 환경의 산물로 보아야 하며 19세기 후반기는 유럽 자본주의제국이 식민지 획득을 위해 대립과 제휴를 펼친 시기이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지역은 이들 국가로부터 점령 혹은 보호국화의 위협을 안고 있었으므로 조선이 일본의 침략성을 간파하지 못한 결과로 조약이 맺어졌다기보다는 당시 시대적 조류로서 인정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직후 서계 문제에서부터 조약 체결까지 8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의 대조선교섭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양국 수호 논의의 진전이 고종 친정 이후의 대일정책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26) 최준채 외, 『앞의 책』 p.206.

27) 김종수 외, 『앞의 책』, p.229.

28) 권희영 외, 『앞의 책』, p.176.

29) 이근관(2004), 『송헌 백충현 교수 정년맞이 기념호』 : 논문 ; 「조일수호조규(1876)의 재평가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관점에서부터-」, 『서울국제법연구』 Vol.11 No.1, pp. 58-60.

30) 최근에는 고종과 박규수, 강위, 신헌 등의 주체적인 개국론의 존재가 밝혀지고 있다.(姜在彦, 「實學 開化 思想的 系譜」, 『朝鮮 開化思想』, 岩波書店, 1980; 原田環, 「1860年前後 朴珪壽 政治思想」, 『朝鮮學報』 86, 1978; 이완재, 『초기개화사상연구』, 민족문화사, 1989, 『박규수 연구』, 집문당, 1999; 손형부, 『박규수연구』, 일조각, 1996; 최덕수, 「강화도조약과 개항」, 『한국사37-서세동점과 문호개방』, 국사편찬위원회, 2000, 이현주, 「강위의 대일개국론과 그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19, 2001)

된다고 보았다.³¹⁾

그런데 위의 표에서 살펴보듯 금성출판사를 제외한 7종의 교과서에서는 모두 조·일 수호조규(강화도 조약)이 왜 불평등한 조약이었는가, 그리고 왜 근대적 조약이었는가에 대한 근거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그 설명이 소략적이다. 또한 근대적 조약과 전근대적 조약의 차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반면 금성출판사는 “근대적 외교 관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교섭에 임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라고 하여 조·일 수호조규(강화도 조약)의 체결 시점에서 해석하려고 하였다.

4. 해설의 부족

최근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대폭 감축’하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앞에 두고 교과서 서술상의 해설 부족을 말하는 것은 이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수업 단축에 따른 역사 교과서 서술의 감축이 과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이 장의 의미를 삼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의 배경은 조선의 내부와 외부의 상황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교과서에서는 이를 축약, 삭제, 때로는 왜곡하면서 그 배경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대원군의 하야는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을 맺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좀 더 그 내부적인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원군의 전제적인 개혁 정치와 통상수교거부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때 은연 중 왕비 민씨의 세력이 성장하여 마침내 대원군을 실각시키기에 이르렀다. 민비는 대원군의 독단에 반감을 품고 반대원군세력을 규합하여 1873년 국왕의 친정을 주장하면서 대원군의 실정을 공격하는 유생 최익현의 상소를 계기로 대원군을 실각시키는 데 성공하였다.³²⁾

이로써 강경한 통상 거부 정책을 취해 오던 대원군은 집권 10년 만에 권좌에서 물러나고 고종과 명성황후 일족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민태호, 민규호, 민영목 등 황후 일족은 노론 북학을 계승한 인사들로서 개화사상에 입각하여 외국과의 통상을 지지하고 있었다. 고종이 이미 20대의 성인이 되었고 서원철폐에 대한 최익현 등 지방 유림의 반발과 황후 및 개화파의 통상론에 밀려 대원군이 실각한 것이다.³³⁾

31) 윤소영(2003), 「朝日修好條規의 역사적 위치」, 『한일관계사연구』 Vol.18, p.132.

32) 변태섭(2008), 『한국사 통론』, 삼영사, pp.377-378.

한편, 메이지 유신 이후 조선과 국교를 모색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은 쇄국 방침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침략 의도를 경계하던 대원군이 이끄는 조선 정부가 거부해 번번이 좌절되었다. 1873년 대원군이 정치적으로 실각하자 일본 정부는 다시 국교 교섭을 시도하였다. 1874년 11월 부산에 도착한 외무대승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는 새로 작성한 서계를 올리면서 조선 정부에 국교 수립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새로 제출된 서계에도 ‘대일본’, ‘황상’ 등 종래 문제된 용어를 그대로 썼음을 확인한 조선 정부는, 서계를 격식에 맞게 고쳐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일본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해 대만 원주민의 유구인 살해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대만을 군사 정벌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 정부는 일본의 침략 의도를 더욱 경계하던 참이었다. 결국 모리야마는 외교적인 교섭 대신 군함을 조선에 파견하여 군사적인 방법으로 조선을 굴복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다는 견해를 부관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를 시켜 일본 정부에 보고하였다. 메이지 유신을 전후로 일본 정계에서 대두하던 조선 침략론인 이른바 정한론을 계승한 건의내용이었다.³⁴⁾ 마침내 일본은 1875년 4월 군함 춘일호, 운요호, 정묘호를 조선 연해에 파견하였고 그중 운요호와 정묘호는 부산에 입항하여 함포 사격을 했다. 운요호는 5월에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함경도 영흥만까지 진출하여 측량 겸 시위 임무를 마친 뒤 일본으로 일단 돌아갔으나 무력을 수교 방침으로 세운 일본은 그해 8월 다시 운요호를 파견하였고 이 운요호가 8월 20일에 강화도 초지진으로 다가와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른바 운요호 침입사건이 일어났다. 침입목적은 달성한 운요호는 8월 29일 일본 나가사키로 귀환하였다. 이것이 운요호 사건의 전말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각 교과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표 3>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표 3>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의 배경

출판사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의 배경
천재교육	1873년에 최익현의 상소를 계기로 대원군이 물러나면서 고종의 친정 체제가 수립되었다. ...조선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새로운 외교 관계 수립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일본에서는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자는 정한론이 나타났으나, 의견 대립이 일어나 당장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³⁵⁾
미래엔	1873년 흥선 대원군이 권력에서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면서 대외 정책에 변화가 나타났다. ...무사 계층의 불평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 조선을 무력으로 침공하자는 정한론이 일어났다. ³⁶⁾

33) 한영우(2008), 『다시찾는 우리 역사』, 경세원, p.465.

34) 김태웅(2004),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근대』, 숲, p.34-35.

지학사	1873년에 흥선 대원군이 물러난 후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고 민씨 세력이 정권을 주도하였다. 이후 열강의 군사적 침략을 피하려면 문호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통상 개화론이 힘을 얻었고, 종래의 외교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³⁷⁾ *정한론에 대한 언급 없음.
비상교육	흥선 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민씨 세력이 정치의 주도권을 행사하였다. 그러자 대외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 문호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세력이 점차 힘을 얻었다. ³⁸⁾ *정한론에 대한 언급 없음.
두산동아	중국과 일본이 개항을 한 뒤에도 조선은 서양 열강 및 일본의 개방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강경한 외교 노선을 펼치던 흥선 대원군이 물러난 뒤 고종은 일본과 외교 교섭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서양과의 통상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 조선 정부는 청의 권유와 일부에서 제기된 통상 개화론을 받아들였다. ³⁹⁾ *정한론에 대한 언급 없음.
리베르스쿨	서계 사건을 빌미로 일본 내에서는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조선 침략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873년 고종이 친정을 선포하면서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 일족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 밖으로는 흥선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청과의 전통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였고, 일본과도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⁴⁰⁾
금성출판사	1868년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으로 이른바 ‘천황’ 중심의 새 정부가 수립되었다. 일본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대마도주를 통해 외교 문서를 동래부에 보내왔지만, 조선은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는 외교 문서가 ‘천황’의 명의로 되어 있는 등 전통적인 외교 형식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일본이 서양 여러 나라와 이미 외교 관계를 맺은 사실도 문제가 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을 공격하자는 주장(‘정한론’)이 제기되었다. … 1873년에 고종이 직접 정사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대외 정책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적극적인 자세로 일본 외교 문서를 접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⁴¹⁾
교학사	일본은 메이지 정부 수립 직후 외교 정상화를 위해 조선에 서계를 보냈다. … 1873년 흥선 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다. 고종의 친정 소식은 일본 정부에게도 전해졌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과 수교하기 위해서 다시 외교 문서를 보냈다. 그러나 1875년 외교 문서에도 여전히 조선이 인정할 수 없는 용어가 적혀 있었다. … 조선은 대외적으로 일본의 압박과 박규수 등의 통상 수교 주장, 청의 개항 권고 등을 받아들여 일본과 협상에 나

	썼다. *이야기 한국사) 조선의 서계 수리 거부와 조선 침략론의 재등 장 ⁴²⁾
--	---

우선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의 배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국내의 배경과 일본 자국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학사, 비상교육, 두산동아 교과서에서는 국내의 배경인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통상 개화론의 대두만을 이야기하고 서계 문제라던가 정한론의 재개와 같은 국외 배경에 대한 서술이 없다.

또한 천재교육을 제외하고 나머지 7종의 교과서에서는 모두 흥선대원군이 왜 정계에서 물러났는지 설명이 없다. 다만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만 ‘최익현의 상소를 계기로’라고 하고 있는데, 서원 철폐와 같은 정책에 대한 유생들의 반발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한편 비상교육 교과서에서는 설명의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시 고종이 정치 전면에 등장한 것은 1873년도의 일이며 ‘외교 문서’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 것은 1874년 11월의 일이다.

정리하면 메이지 유신→일본의 서계 문제→일본에서의 정한론 제기, 실현되지 못함→대원군 하야, 고종 정치 전면에 등장→서계 문제 다시 제기→정한론 다시 제기→운요호 사건의 순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축약하다보니 국내외 정황 중 국내 또는 국외의 정황만 전달하거나 국내외 모든 정황을 설명하더라도 설명이 미진한 경우가 8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나타났다.

5. 사실의 오류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은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이었다.

주요한 두 조약의 조항들을 살펴보면,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의 제7관에는

- 35) 주진오 외, 『앞의 책』, pp.182-183.
- 36) 한철호 외, 『앞의 책』, p.178.
- 37) 정재정 외, 『앞의 책』, p.216.
- 38) 도면희 외, 『앞의 책』, p.204.
- 39) 왕현중 외, 『앞의 책』, p.160.
- 40) 최준채 외, 『앞의 책』, p.206.
- 41) 김중수 외, 『앞의 책』, p.227.
- 42) 권희영 외, 『앞의 책』, pp.175-176.

개항장에서의 일본국 화폐의 통용을, ‘조·일 무역 규칙’ 제6칙에는 조선국 항구에 머무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으며 제7칙에서는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선박들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수출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⁴³⁾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이 1876년 2월에 맺어졌으며 그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1876년 8월에 나머지 두 조약이 맺어졌으므로 시간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각 교과서마다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내용

출판사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내용
천재교육	강화도 조약에 이어 조선은 일본과 부속 조약을 잇달아 체결하였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을 통해 거류지(조계) 설정과 개항장에서의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하였으며, 조·일 무역 규칙을 통해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와 양곡의 무제한 수출 등을 허용하였다. ⁴⁴⁾
미래엔	뒤이어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이 체결되었다. 이에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의 유통이 허용되었고, 양곡의 무제한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일본의 수출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여되지 않았다. 그 결과 조선은 일본의 경제 침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탐구 활동: 조·일 수호 조규와 그 후속 조약의 내용과 성격 ⁴⁵⁾ *1876년 2월과 6월.
지학사	이어서 조선은 일본과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개항장 내 일본인 거류지 설정, 일본 화폐의 통용, 양곡의 무제한 수출과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조선은 일본의 정치적·경제적 침탈에 직면하게 되었다. ⁴⁶⁾ *조·일 수호 조규(1876.2), 부속 조약(1876.8) ⁴⁷⁾
비상교육	끝이어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인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조·일 통상 장정)이 체결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은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직면하게 되었다. ⁴⁸⁾
두산동아	추가로 체결된 조약에서 일본 상품의 무관세 무역, 외국 화폐 유통권 등을 허용하였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1876) ⁴⁹⁾
리베르스쿨	강화도 조약에 이어 몇 달 뒤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조·일 통상 장정)을 체결하였다. 조·일 수호 조규

43) 김태웅, 『앞의 책』, pp.134-135.

	<p>부록에서는 조선에서 일본인 외교관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개항장 사방 10리 안에 일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역인 거류지를 설정하였다. 조·일 무역 규칙에는 양국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무항세 조항이 들어 있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관세권의 회복을 위해 일본의 반대에도 새로운 통상 장정의 체결을 모색하였다. 결국, 1883년에 조·일 통상 장정의 무관세 규정이 개정되어 일본으로부터 관세권을 인정받게 되었다.</p> <p>*탐구활동)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조·일 무역 규칙⁵⁰⁾</p>
<p>금성출판사</p>	<p>강화도 조약에 뒤이어 체결된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에는 일본 외교관의 여행 자유 인정, 개항장에서의 일본인 거류지(조계) 설정, 일본 화폐의 유통 허용,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인정 및 양국 무제한 수출 허용 등의 불평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⁵¹⁾</p>
<p>교학사</p>	<p>이후 강화도 조약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을 체결하였다.⁵²⁾</p>

<표 4>에서 살펴보듯이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조약, 즉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교육과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8종의 교과서들이 두 개의 조약 내용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 두 조약의 내용을 ‘개항장에서 일본 거류민의 거류지 설정’, ‘일본 화폐 유통’,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양국 무제한 유출’로 합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의 두 조항을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의 내용으로, 뒤의 두 조항은 ‘조·일무역 규칙’의 내용으로 보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조약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 조약에 대한 내용 설명도 서로 다르게 되어야 한다.

한편, 미래엔 교과서는 조약 체결의 년월을 ‘강화도 조약’은 1876년 2월로 나머지 두 개의 부속조약은 1876년 6월로 서술하고 있는데 두 개의 부속조약은 모두 1876년 8월이 맞다.

44) 주진오 외, 『앞의 책』, p.184.
 45) 한철호 외, 『앞의 책』, p.179.
 46) 정재정 외, 『앞의 책』, p.216.
 47) 정재정 외, 『위의 책』, p.217.
 48) 도면희 외, 『앞의 책』, p.205.
 49) 왕현중 외, 『앞의 책』, pp.160-161.
 50) 최준채 외, 『앞의 책』, pp.206-207.
 51) 김중수 외, 『앞의 책』, p.229.
 52) 권희영 외, 『앞의 책』, p.176.

또한 천재교육에서는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의 ‘일본인 거류지 설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개항장에서’ 라는 말을 생략하고 있다. 이것은 이후 나오는 내지 무역권을 설정하고 있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설명과도 상당히 대치되게 됨으로 이는 반드시 ‘개항장에서’만 해당되는 조약이었음을 밝혀주어야 한다.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오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맺음말

지금까지 2014년 현재 발행되어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8종의 교과서에서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의 서술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용어의 불일치, 용어(사실)에 대한 해석, 해설의 부족, 사실오류 등의 4가지 분석 기준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다.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의 경우 첫째, 용어의 불일치와 관련하여 교과서에는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 등과 같은 용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둘째, 용어(사실)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문제는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을 ‘근대적 불평등 조약’으로 보는 것이 정당인가 하는 점이었다. 한국사에서 ‘근대’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심할 필요가 있으며, ‘불평등’의 조건과 상황을 당시의 정황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해설의 부족에서는 조약의 체결 배경을 설명하는 가운데 국내외적인 상황을 축약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오류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현재 교육과정 속에서 역사 내용을 역사교과서 안에 모두 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과서 내용과 양의 증가가 다소 있더라도 사실 오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축약하여 서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실의 오류와 관련하여 부속 조약의 내용 서술 오류, 연도의 오류 등을 살펴보았다.

사실의 오류는 실제로 수정하기가 다른 여러 기준보다는 용이하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그 해석과 판단을 탐구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역사 용어는 ‘가치’의 문제와 대중이 동의하는 인식이 모두 종합된 표현의 형식이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 처럼 관습처럼 사용된 용어가 쉽고 빠르게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은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거나 우리나라 교과서의 좌파와 우파 가르치기에 많은 관심이 두어졌었다. 그러나 역사 연구가, 역사 교육자로서 심사숙고하여 연구

와 사고의 폭을 넓히고 새롭게 하는 자세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 역사의 진면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치밀한 연구를 통한 적절한 용어가 개발되고 정의되고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⁵³⁾

반면교사의 마음으로 역사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교과서의 근현대사 용어 사용과 서술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단순한 사실 오류부터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資料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교과서편수자료(Ⅱ) -인문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편-』, 경성문화사, p.4.
- 교육과학기술부(2011.12.30),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p.10, p.8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54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608.

2. 論著

1) 著書

- 권희영 외(2014), 『고등학교 한국사』, 교학사.
- 김중수 외(2014),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
- 김태웅(2004),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근대』, 솔, p.34-35.
- 도면희 외(2014),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 변태섭(2008), 『한국사 통론』, 삼영사, pp.377-378.
- 왕현중 외(2014), 『고등학교 한국사』, 두산동아.
- 정재정 외(2014),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 주진오 외(2014),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 진용경(1985),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 최준채 외(2014),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스쿨.

53) 李景植, 「앞의 논문」, p.73.

한영우(2008), 『다시찾는 우리 역사』, 경세원, p.465.

한철호 외(2014),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 論文

공태영(1999), 「역사용어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학습 방안」, 『역사교육논집』 Vol.23·24, 역사교육학회, pp. 319-320.

김홍수(2012), 「일본 역사교과서의 강화도조약 기술 검토」, 『東北亞歷史論叢』 No.35.

역사문제연구소 편집부(2005), 「[특집] 역사용어 바로 쓰기」, 『역사비평』 No.73, 역사문제연구소.

윤소영(2003), 「朝日修好條規의 역사적 위치」, 『한일관계사연구』 Vol.18, 한일관계사연구회, p.132.

李景植(2009), 「歷史教材의 撰述에서 用語選定의 問題」, 『歷史教育』 Vol.109, 역사교육연구회, p.73.

이근관(2004), 『송헌 백충현 교수 정년맞이 기념호』 : 논문 ; 「조일수호조규(1876)의 재평가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관점으로부터-」, 『서울국제법연구』 Vol.11 No.1, pp.58-60.

이길영(2005), 「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역사 용어 서술과 개선 방안」, 『역사교육논집』 Vol.35, 역사교육학회.

鄭善影(1994), 「歷史用語의 性格과 그 教育的 利用」, 『歷史教育』 Vol.56, 역사교육연구회.

要 旨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description about Ganghwa Treaty in eight current Korean history textbooks of high school based on four criteria: an inconsistent terminology, the term(fact) evaluation, the lack of commentary

Until now, we have examined the distortion of Japanese history textbook or we have been interested in the left and right of Korean history textbooks. But back to the basics of teaching Korean history textbooks, we have to acknowledge that many of the errors in the Korean history textbooks are also needed to be corrected. History term is the form of recognition and representation with the public agree.

In the case of Ganghwa Treaty, there are the term mismatch between eight textbooks, the problem of evaluation, the lack of commentary and the factual incorrectness. As you have seen, when we say the historical evaluation about the Ganghwa Treaty in the textbooks, we have to reveal the definition of 'Modern' and 'inequality' in the historical context.

キーワード : Korean history textbook, historical term, Ganghwa Treaty, inconsistent terminology, factual incorrectness, high school

투 고 : 2014. 8. 31
1차 심사 : 2014. 9. 13
2차 심사 : 2014. 10. 4